

투 자 설 명 서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 - 자1호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 - 자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 - 자1호” 수익증권의 매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간접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 - 자 1 호

2. 자산운용회사명 :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전화번호 : 02-724-7400

3. 판 매 회 사 명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은행(주)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055-290-80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6월 6일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자산운용협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자산운용협회: www.kofia.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요약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 쪽)

1. 명칭: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자1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추가형, 공모형, 종류형,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2~5 쪽)

구분	주요내용
1.투자목적	국내 및 해외주식(글로벌테마주)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 채권형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주요투자전략	일부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다양한 투자 테마에 집중투자하고 지속적 테마 발굴, 글로벌시장 및 한국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여 한국시장에 적합한 장기테마군에 투자 채권형 모투자신탁은 국내 채권(A-이상)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주요통화(USD, EUR, JPY)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50% 수준에서 헤징
3.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dws-korea.com)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이정원	74년생	차장	61	13,971	도이치자산운용

※ 상기 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단위:억좌, 2010년 6월 6일 기준)

7. 투자실적 추이: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일 이후
		09.06.07 ~10.06.06	08.06.07 ~10.06.06
수익률	11.68	-11.36	-11.41

8. 위탁운용사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Global Thematic)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Global Thematic)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의 해외위탁운용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Global Thematic Partners, LLC)” 로 변경됩니다. ※ 단, 위탁에 따른 책임은 운용사에게 있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정보(본문 6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A	C1	C-I	C-e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¹⁾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 의 1%	-			납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¹⁾ 이익금의 70%				환매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0.84			매3개월	
		판매회사보수	0.969	1.690	0.03	1.368	매3개월
		기타보수	0.083			매3개월	
		보수합계	1.892	2.613	0.953	2.291	-
	기타비용 ²⁾	0.01	0.01	0.01	0.01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³⁾		1.902	2.623	0.963	2.301	-	

* 단, 종류형 클래스의 판매보수율은 다음의 보수 계산 기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된다.

기간 종류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
A	0.938%	0.906%	0.875%
C1	1.420%	1.150%	0.880%
C-I	변경없음		
C-e	1.176%	0.984%	0.792%

주¹⁾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²⁾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운용기간중 발생한 비용을 연환산

주³⁾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10.06.0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단, 국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시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납입 (5시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적용)</td> </tr> </table> </div>	D	D + 1	-----		자금납입 (5시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1</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 </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납입 (5시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적용)</td> <td></td> </tr> </table> </div>	D	D + 1	D + 2	----- -----			자금납입 (5시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적용)										
D	D + 1																									

자금납입 (5시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적용)																									
D	D + 1	D + 2																								
----- -----																										
자금납입 (5시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8영업일(D+7) 에 환매대금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매청구 (5시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가격 적용</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환매대금 지급</td> </tr> </table> </div>	D	D + 2	...	D + 7	----- ----- -----				환매청구 (5시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영업일(D+8) 에 환매대금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D + 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매청구 (5시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가격 적용</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환매대금 지급</td> </tr> </table> </div>	D	D + 3	...	D + 8	----- ----- -----				환매청구 (5시이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 + 2	...	D + 7																							
----- ----- -----																										
환매청구 (5시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 + 3	...	D + 8																							
----- ----- -----																										
환매청구 (5시이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은)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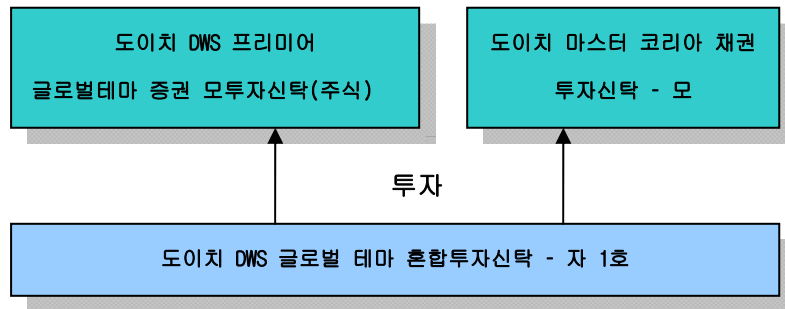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인)

< 본 문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 - 자 1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류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추가형, 공모형, 종류형,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 가. 종류형 가입조건
 1. Class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단,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2. 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Class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 계정),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4.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 나. 모투자신탁의 구조



4.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및 2007년 12월 5일
- 연혁 2009년 8월 24일 수탁은행 변경 (하나은행->신한은행)
 수탁은행 보수 인하 (6bps->5.8bps)
 2010년 5월 3일 판매보수 인하 (A1, C1, C-e 클래스)
 2010년 7월 1일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변경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스 ->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6. 수탁고 추이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12.05 - 2010.06.04	3	3	0	0	1	1	3	2
2008.12.05 - 2009.12.04	5	3	1	0	2	2	3	3
2007.12.05 - 2008.12.04	0	0	8	8	3	2	5	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국가 개별의 법률에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국내 및 해외 주식 (글로벌 테마주)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하고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부터 안정적 이자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글로벌 테마 (신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구조조정수혜주, 신흥중산층, 보안, 지배적 공급자, 지적재산권, 에너지산업 뉴리더 등)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 투자신탁- 모

국내 채권(A-이상)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함으로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가. 당해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주식형 모투자신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 테마 (Global Thematic)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형 모투자신탁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모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90% 이상수준에서 투자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도’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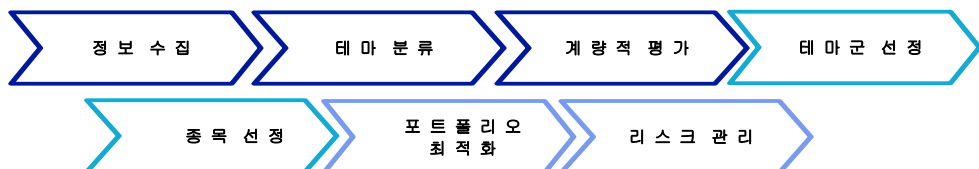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예시)

가) 투자대상 종목군 : **글로벌 테마 (신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구조조정수혜주, 신흥증산층, 보안, 지배적 공급자, 지적재산권, 에너지산업 뉴리더 등)**

테마	투자포인트
신비즈니스 모델 (Disequilib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가 오는 산업(예:IT) ■ 산업판도변화에 한발앞서 대응하는 기업들
투매관련주 (Distressed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공시(예:회계부정)이후 투자자들의 투매로 인해 급락,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Global Agri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물, 비료, 농기구, 기반시설 등 농수축산 관련 비즈니스에 투자
시장 헷지 (Market H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러 약세 수혜주(예: 금관련) ■ 자산관리 관련주 ■ 태리관련수혜주
구조조정수혜 (Ex-Atro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구조조정관련 수혜주(예: 일본은행, 부동산관련주)
신흥증산층 (Large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등 이머징국가의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자 계층의 소득증대 관련
현금흐름능력보유기업 (New Annu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정기적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에 대한 수요증대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경제불황기에도 장기적 수익창출 가능한 기업으로 방위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보안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및 금융자산, 데이터 보호 필요
지배적 공급자 (Supply Chain Dom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마트같이 지배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
지적재산권 (Talent & Ingen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연구개발)등을 통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기업
에너지산업 뉴리더 (Asymmetric Negoti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와 신규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LNG관련 주식

나) 투자 과정



※ 상기투자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투자테마 관련주 등은 향후 투자운용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 모투자신탁**: 국내 채권(A-이상)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3) 당해 투자신탁의 유동성 및 마스터 코리아채권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도이치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이고, 작성 기준일 현재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외화표시자산 운용 업무는 [2007.03.14]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스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로 변경됩니다.

4)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는 일부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등 표시 자산 : 투자금액의 50% 수준에서 헤징 전략 수행할 예정.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헤징방법, 헤징효과 등을 고려하여 헤징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헤징 전략을 수행

※ 상기 헤징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아래와 같으며(신탁재산에 부정적영향 미칠 상황의 중요도 순에 따라 나열),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당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은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과 국내 실세 금리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당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유가증권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u>모투자신탁의 운용성과는 투자대상인 해외국가들의 주식 가격변동과 국내채권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u>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개별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 등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일부 통화에 대해 환 헤지를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므로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등 표시 자산 : 투자금액의 50% 수준에서 헤징전략 수행할 예정.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헤징방법, 헤징효과 등을 고려하여 헤징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헤징 전략을 수행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별로 평가한 다음, 총괄하여 원본손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중간수준인 경우 3등급, 낮은 경우 4등급, 아주 낮은 경우 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중 주식형 모 투자신탁은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중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가 및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펀드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50%이상 투자가능펀드 장외파생상품펀드(최대손실규모: 투자원금의 100%)
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50%이하 투자 펀드 장외파생상품펀드 (최대손실규모: 투자원금의 20%)
4 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 장외파생상품펀드 (원금보존추구형)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 위주로 운용

- 이 투자신탁은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종류별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ws-korea.com)·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정원	74년생	차장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팀 및 해외자산운용팀

상기 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추이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의 (<http://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의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단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9.06.07 ~10.06.06	08.06.07 ~09.06.06	07.12.05 ~08.06.06		
투자신탁	11.68	-29.64	-5.99		

나. 연평균

(단위:%)

수익률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6.07 ~10.06.06	08.06.07 ~10.06.06			
투자신탁	11.68	-11.36			-11.41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Class C1, C-l, C-e: 해당사항 없음 Class A : 1.0%	납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Class A, C1, C-l, C-e: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합계	-	

2. 투자

가. 당해투자신탁

신탁에게

Class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단,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부과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1,000분의 8.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1,000분의 9.69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1,000분의 0.58	매 3개월

되는

보수

및 비용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1,000분의 0.25	매 3개월
총 보수	연1,000분의 18.92	
기타 비용 ¹⁾	연1,000분의 0.10	사유발생시 지출
총보수 · 비용 비율	연1,000분의 19.02	

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1,000분의 8.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1,000분의 16.9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1,000분의 0.58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1,000분의 0.25	매 3개월
총 보수	연1,000분의 26.13	
기타 비용 ¹⁾	연1,000분의 0.10	사유발생시 지출
총보수 · 비용 비율	연1,000분의 26.23	

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1,000분의 8.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1,000분의 0.3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1,000분의 0.58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1,000분의 0.25	매 3개월
총 보수	연1,000분의 9.53	
기타 비용 ¹⁾	연1,000분의 0.10	사유발생시 지출
총보수 · 비용 비율	연1,000분의 9.63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1,000분의 8.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1,000분의 13.68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1,000분의 0.58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1,000분의 0.25	매 3개월
총 보수	연1,000분의 22.91	
기타 비용 ¹⁾	연1,000분의 0.10	사유발생시 지출
총보수 · 비용 비율	연1,000분의 23.01	

* 단, 종류형 클래스의 판매보수율은 다음의 보수 계산 기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종류 \ 기간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
A	0.938%	0.906%	0.875%
C1	1.420%	1.150%	0.880%
C-l	변경없음		
C-e	1.176%	0.984%	0.792%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 각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기타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함

1. 투자증권의 매매 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모두자산탁

모투자신탁은 모펀드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유가증권매매비용, 유가증권의 해외보관대리인비용 * 및 기타비용등을 제외하고는 운용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없습니다.

* “해외 보관대리인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거래 수수료 (Transaction fee)
2. 보관 비용 (safe-keeping fee)
3. 기타부수비용 (out-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1,000만원 투자시 예상비용>

(단위 : 천원)

Class A 수익증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5	704	1,144	2,451

Class C1 수익증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9	757	1,198	2,509

Class C-I수익증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312	547	1,244

Class C-e 수익증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679	1,099	2,346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
소득에
대한 과
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
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6. 12월 말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 상기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외 상장 주
식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상은 국내 거
주자에 한합니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전에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및 평가차익은
개정전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한편, 펀드가 해외 채권, 주식 등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 원천소득금액의 14%를 한도로 하여 환급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해외 상장 주식거래에 대하여
는 동 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기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며,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신탁약관 제 19조 제 3항을 준용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Class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단,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2. 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Class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 계정),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4.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 절차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지급.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환매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수수료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환매수수료

Class A,C1,C-l,C-e :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 90 일 이상 - 없음

3. 이익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
등의 탁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분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
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금 지급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
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에 대한 유의사항은,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가. 당해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주식형 모투자신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
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채권형
모투자신탁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모”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90% 이상수준에서 투자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가) 투자대상 종목군 : 글로벌 테마 (신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구조조정수혜주, 신흥중산층, 보안, 지배적 공급자, 지적재산권, 에너지산업 뉴리더 등)

관련주

테마	투자포인트
신비즈니스 모델 (Disequilib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급속한 변화가 오는 산업(예:IT) ■ 산업판도변화에 한발앞서 대응하는 기업들
투매관련주 (Distressed Compan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공시(예:회계부정)이후 투자자들의 투매로 인해 급락,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글로벌 애그리비즈니스 (Global Agri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축산물, 비료, 농기구, 기반시설 등 농수축산 관련 비즈니스에 투자
시장 헷지 (Market H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러 약세 수혜주(예: 금관련) ■ 자산관리 관련주 ■ 테러관련수혜주
구조조정수혜 (Ex-Atro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구조조정관련 수혜주(예: 일본은행, 부동산관련주)
신용증신종 (Large Un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등 이머징국가의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자 계층의 소득증대 관련
현금창출능력보유기업 (New Annu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정기적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에 대한 수요증대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경제불황기에도 장기적 수익창출 가능한 기업으로 방위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보안(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및 금융자산, 데이터 보호 필요
지배적 공급자 (Supply Chain Dom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마트같이 지배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
지적재산권 (Talent & Ingen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연구개발)등을 통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기업
에너지산업 뉴리더 (Asymmetric Negoti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와 신규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LNG관련 주식

나) 투자 과정



※ 상기투자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투자테마 관련주 등은 향후 투자운용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모: 국내 채권(A-이상)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3) 당해 투자신탁의 유동성 및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투자신탁-모”의 자산운용회사는 도이치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이고, 작성 기준일 현재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외화표시자산 운용 업무는 [2007.03.14]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스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로 변경됩니다.

4) 본 상품은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일부 통화에 대해 환 헤지를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므로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등 표시 자산 : 투자금액의 50% 수준에서 헤징 전략 수행할 예정.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헤징방법, 헤징효과 등을 고려하여 헤징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헤징 전략을 수행

※ 상기 헤징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의 투자위험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당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은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과 국내 실세 금리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당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원금 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유가증권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u>모투자신탁의 운용성과는 투자대상인 해외국가들의 주식 가격변동과 국내채권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u> 또한 이 투자신탁은 개별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이 해외주식 등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형 모투자신탁은 일부 통화에 대해 환 헤지를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므로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헤징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등 표시 자산 : 투자금액의 50% 수준에서 헤징전략 수행할 예정.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헤징방법, 헤징효과 등을 고려하여 헤징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헤징 전략을 수행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투자신탁 재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투자대상

가.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을 주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하고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모”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 37 조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 수권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주식이라 함은 글로벌주식시장의 다양한 테마(예: 신비즈니스 모델,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구조조정수혜주, 신형중산층, 보안, 지배적 공급자, 지적재산권, 에너지산업 뉴리더 등)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20%까지 가능)

3)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p>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p>
4) 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 모두자산신탁(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1) 국내채권	60%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를 제외합니다)
2) 어음	40%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한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음에 투자합니다
3) 자산유동화증권	95%이하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합니다.
4) 수익증권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5)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의 100%이하가 되게 합니다.
6) 투자증권대여	50%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7) 채권관련 장내파생 상품	15%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가 되게 합니다
8) 환매조건 부채권매도	50%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6)기타		<p>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p>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통상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단,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자산운용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저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1)호 내지 4)호 및 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당해투자신탁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이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모투자신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 후 1개월 가격변동 등은 3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항의 사유)
동일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가격변동 등은 3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항의 사유)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후 1개월 가격변동 등은 3개월까지(집합투자규약 제 20 조 2항의 사유)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 모투자신탁(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에 적용되는 투자제한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③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④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⑥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⑦ 이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⑧ 사모사채를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로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말한다)의 차상위등급(신용평가등급 A를 말한다) 미만인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약관 제 37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은 약관 제 36 조제 1 항 제 7 호 및 약관 제 37 조 제 1 항제 2 호 본문 및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가. 당해 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 방법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그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거나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그 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기타 투자자산등에 대해서는 아래 모투자신탁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한다.

나. 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비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단,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 (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1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서울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며,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 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이 경우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신탁약관 제 19조제 3항을 준용합니다.
 -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Class A 수익증권 : 제한없음 (단,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2. 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Class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 계정),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에 따른 기관투자자

4.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2. 환매관련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분배관련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유의사항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시효등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번지 영풍빌딩 19 층 02)724-7400
회사연혁	2002. 2 도이치자산운용(주) 설립 2002. 6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2. 6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업무위탁 (1)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신한AITAS에 위탁
당해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중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신한 AITAS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며 위탁의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위탁
작성 기준일 현재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의 외화표시자산 운용 업무는 [2007.03.14]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스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글로벌 테마틱 파트너스 (Global Thematic Partners, LLC)” 로 변경됩니다.

(단위:백만원)

3. 최근 2 개
사업 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010.3.31	2009.3.31	항목	2009.4.1~ 2010.03.31	2008.4.1~ 2009.03.31
현금및예치금	18,290	20,828	영업수익	18,044	17,944
유형자산	301	543	영업비용	17,832	20,515
기타자산	8,136	7,302	영업이익	212	-2,571
자산총계	26,727	28,673	영업외수익	76	40
기타부채	5,385	7,497	영업외비용	7	2
부채총계	5,385	7,497	경상이익	281	-2,533
자본금	19,411	19,411	특별이익	0	0
자본잉여금	1,678	1,678	특별손실	0	0
이익잉여금	253	87	세전순이익	281	-2,533
자본총계	21,342	21,176	법인세비용	115	-427
부채및자본총계	26,727	28,673	당기순이익	166	-2,106

4. 운용자산규모

[2010.05.09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746	1,710	334	0	4,904	3,552	0	510	367	0	0	16,123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이정원	74년생	차장	61	13,971 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팀 및 해외 자산운용팀

※ 상기 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 2010년 6월 6일 기준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경남은행(주)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설립일 (1970.05.22)

2. 주요 업무
-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판매행위준칙 등)
- (1)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2) 판매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함)



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대경빌딩 120
전화번호	02-2151-7809
홈페이지	www.shinhanbank.com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T :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년 6월 15일, 자본금: 21 억원
2. 주요 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 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한국채권 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02-399-3350	설립일 :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나이스채권 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34번지 대일빌딩 15층 T.02-739-3590	설립일: 2000. 6 자본금: 55억원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 제공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의결사항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⑤ 신탁약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집주체 및
통지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면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④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⑤ 제4항의 사항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⑥ 자산운용회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합니다.

⑦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제28조 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

행된 수익증권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본다.

2. 잔여재산분배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 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②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가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③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약관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이나, 수탁회사의 변경
-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0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ws-korea.com)·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마.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도이치 DWS 글로벌 테마 혼합투자신탁-자 1호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